

하고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00㎡이상 시유지 : 193필지 733,906㎡

- 외국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정보 등 첨단분야의 기업도 공유재산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고,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료 등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까지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감면토록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내 첨단 중소기업에게도 적용토록 상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 등의 동산을 제외한 물품을 취득·보관·사용 처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물품관리조례중,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범위와 불용품매각시 전문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임.
- 안 제16조제3항은 불용품의소요조회와불용결정에관한규정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의 물품」을 불용결정하기 전에 시소속 사업소 및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요조회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토록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규정상 최저 하한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 소액품목, 재활용하여도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

요되는 품목 등에까지 실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함께 그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바, 최소한의 하한선 규정을 설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98.10.31 현재 소요조회결과 —
44개부서에서 총57회에 걸쳐 2,340품목을 조회한 결과 500만원미만의 품목이 95.2%(2,228품목)이고, 재활용하겠다는 품목은 1.4%(32품목)에 불과함.

- 안 제17조제4항은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물품가격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토록 하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규정에 의하면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매각시가가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물품가격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도 모두 감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내구년도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토록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 토 보 고 서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세조례 부칙 제2항의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1995년도까지 7.5%를 적용하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소득할주민세를 1996년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10%의 인상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 연장하며,